

2020 년 12 월 1 일

출입국재류관리청

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해 일본에서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기 때문에 취로(아르바이트)를 희망하시는 분에게

코로나로 인해 본국이나 거주지에 귀국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서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외국인 분에 대해서 주 28 시간 이내의 취로(아르바이트)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

취로(아르바이트)를 희망하시는 분으로 아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 관서에서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.

1 자격외활동허가 신청(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.)

2 요건

- (1)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으로 취로를 할 수 없을 것.
- (2) 귀국이 곤란할 것.
- (3) 재일 친족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, 귀국할 때까지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것.

3 제출 서류

- (1)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
- (2) 귀국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(최근의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등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)
- (3) 이유서(샘플은 [여기를](#) 확인해 주십시오.)